

공익신고 처리 흐름도

조사기관 자체 접수 공익신고 사건



- ① 신고서 기재사항, 증거 및 신고내용 등 확인
- ② 공익신고 접수
- ③ **신분 공개 동의 여부 확인**
- ④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

- ① 공익신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일반민원으로 접수



- ① **279개 법률 위반 여부 확인**
- ②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행정처분 해당 여부 확인



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

- ① 직접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
- ②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

관할이 아닌 경우

- ①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
- ② 신고자에게 이송사실 등 통지

법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

- ① 조사 불개시 또는 중단
- ② 신고자에게 조사 불개시 사실 등 통보

공익신고 처리 시
유의사항



**공익신고자, 피신고자 등의
인적사항 임의 노출·공개·보도 금지**
⇒ **위반시 형사처벌**

- (신분공개 부동의 사건을 조사기관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)

신고자의 성명이나 신고자 유추가능 사항은 반드시 삭제 !!

- 신고자로 가장해 **유선으로 신고내용 등을 묻는 경우**가 있으므로 **주의 요망!!**

공익신고 처리 흐름도

권익위 이첩, 송부 공익신고 사건



- ①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 조사
- ②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
- ③ **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결과 통보**

- ①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등에 이첩



- ①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(제품 회수 등)
- ② 재조사 요구(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직권)



- ① 의견제시, 재조사 요구에 따른 조치
- ② 권익위에 결과 통보

공익신고 처리 시
유의사항



공익신고자에게 보호·보상 제도 안내

- 신고자에 대한 신변위협, 불이익조치 사실을 알게 된 경우
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
- 공익신고 처리 결과 통지 시 신고자에게 **<보호·보상제도 안내문> 제공**